

앱 통한 카드론 대출, 사기죄 아니다



김지혜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최근 대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를 두고, “애플리케이션 기반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대법원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50만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카드사로부터 총 1억원이 넘는 대출을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해 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였다. 매월 변제해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사들을 기망해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를 일으키기 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사람이 아닌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은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 실제로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신청과 승인, 송금 등 모든 절차가 카드사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기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서의 형사책임 범위를 재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 일상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오프라인 유통업 경고음에 지방부터 흔들린다



기자 수첩

안재선
(유통&라이프부)

“당장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집 앞이 아닌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멀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마트 하나 없어지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흠플러스가 최근 임대점주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마트 점포 폐지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 지역민이 건넨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마트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옆 동네에 땀을 흘리며 다녀와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마트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자산

유동화를 이유로 하나둘씩 지방 점포를 폐점하며 살길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리테일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부터 잇따라 점포를 폐점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대구 동아아울렛, 뉴코아아울렛 안산점, 모란점 등 주요 매장들이 문을 닫았고, 지난해에는 부산의 NC백화점 서면점이 문을 닫았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포를 정리하고 도심형 아울렛으로서 새로운 공간 혁신에 나선다는 전략에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편에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는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렇게 유통기업들이 매장을 철수하고, 폐점하면서 유통 인프라는 다시 약해진다. 이같이 점포 수가 줄면서 지방 상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니 해당 지역에는 거주민들이 몰리지 않는 구조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다. 대표적으로는 해묵은 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제한 등의 여건을 풀어 자유로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매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한다. 풍선효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른 곳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면, 그 억눌린 문제점은 또 다른 곳에 문제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지칭한다.

지방 상권 타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곳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 경기 침체로 지방 상권이 무너지고, 다시 인구가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다.



김상회의四季

과학과 신

서양에서 출발한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에는 몇 가지 도그마(Dogma)가 있다.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일체 사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신 개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태에 의하지 않고 출생했다는 독생자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도 모두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 등이 대표적 도그마일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의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데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대부분 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주관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객관성을 모토로 하는 과학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설 자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명백함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미신이라 치부하는 성향이 강하고 실제로 신비주의적인 허황됨으로 흐세무민으로 이끄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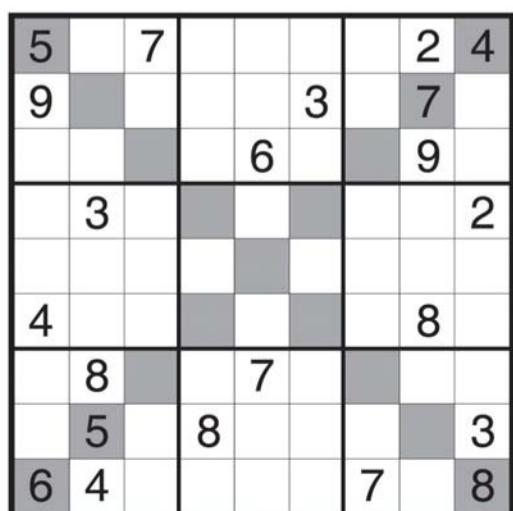
어떤 과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이 반드시 충돌하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이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현상을 증명할 만큼 갈 길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의 대상은 물질과 자연과 지금 과학이 알아낸 것들은 아주 극소수여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 밝혀낸 이치를 이용하여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종교에서 말하는 이치도 더 많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종교가 인간의 존재성과 근원, 그 실존에 대한 것이 대상이라면 과학 역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치가 같다는데서 하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학자들이 밝혀낸 양자들의 운동 역학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인식과 흡사하다는 논문은 위에 인용한 과학자의 주장과 상통하는 바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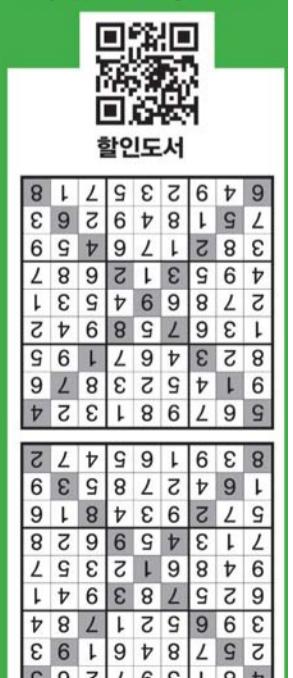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682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786 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